

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(2024. 12. 16.)에서  
의결된 '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'을 아래와 같이  
공포한다.

2024년 12월 17일

고흥군의회 의장

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written over the red seal, identifying the Chairman of the Gohung County Council.

고흥군의회 규칙 제2024-39호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·보충발언·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안건 발의자의 제안설명, 위원회 심사보고,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예외로 한다.

제71조제1항 중 “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”를 “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,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0조(발언시간의 제한)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질의·보충발언·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보충발언은 일문일답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1조(예산안 심의) ① 의회에 예산안(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제출되는 때에는 <u>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40조(발언시간의 제한)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<u>질의·보충발언·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안전 발의자의 제안설명, 위원회 심사보고,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예외로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1조(예산안 심의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,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</u></p>

④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할 때 예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2명 이내의 사람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⑤ 제4항의 자문 위원의 자문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
2. 각종 기금회계
3. 예산안 첨부 서류

⑥ 자문 위원의 위촉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 2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위원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⑦ 자문 위원에 대해선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-----.

1. -----

2. -----

3. -----
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-----  
-----  
-----.